

● 제298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 
제8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1977]  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[1978]  
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1980]  
**검 토 보 고 서**

2020. 12. 17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**【 김경영, 조상호, 김제리 의원 대표발의 】**

의안번호 1977, 1978, 1980

### **I. 조례안 개요**

#### **1.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- 가. 의안번호 : 1977
- 나. 제 안 자 : 김경영 의원 대표발의(외 9명)
- 다.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16일
- 라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6일

#### **2.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- 가. 의안번호 : 1978
- 가. 제 안 자 : 조상호 의원 대표발의(외 9명)
- 나.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16일
- 다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6일

#### **3.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**

- 가. 의안번호 : 1980
- 가. 제 안 자 : 김제리 의원 대표발의(외 9명)
- 나.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16일
- 다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6일

## Ⅱ. 제안이유

### 1.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(행정안전부, 2020. 7.) 개정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의무적 출자·출연 및 연례적, 반복적 출자·출연 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출연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함.
- 본 조례 개정으로 연례적 출연동의에 따른 입법 및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조례해석의 명확성을 기해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- 이에 사전의결 실시를 위한 ‘일정기간’을 정하여, 연례적, 반복적 출자·출연에 대한 동의안 심사를 정비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2.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(행정안전부, 2020. 7.) 개정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의무적 출자·출연 및 연례적, 반복적 출자·출연 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출연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함.

- 본 조례 개정으로 연례적 출연동의에 따른 입법 및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조례해석의 명확성을 기해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- 이에 사전의결 실시를 위한 ‘일정기간’을 정하여, 연례적, 반복적 출자·출연에 대한 동의안 심사를 정비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**3.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**

-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(행정안전부, 2020. 7.) 개정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의무적 출자·출연 및 연례적, 반복적 출자·출연 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출연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함.
- 본 조례 개정으로 연례적 출연동의에 따른 입법 및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조례해석의 명확성을 기해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- 이에 사전의결 실시를 위한 ‘일정기간’을 정하여, 연례적, 반복적 출자·출연에 대한 동의안 심사를 정비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Ⅲ. 주요내용

#### 1.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시장은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3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2조 개정).

#### 2.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시장은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3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1조 개정).

#### 3.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- 시장은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3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2조 개정).

### Ⅳ. 참고사항

#### 1.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재정법」,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 
편성 운영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유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**2.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재정법」,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 
편성 운영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유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**3.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**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재정법」,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 
편성 운영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유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# 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# 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행정안전부, 2020. 7.)의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연례적, 반복적 출자·출연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의결을 실시하고자 함.

〈표〉 세출 예산과목 [별표11]

| 현 행 |  | 개 정 |   |
|-----|--|-----|---|
| 306 | 01. 출연금  | 306 | 01. 출연금   |
| 출연금 | 1.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<br>(중략)<br>2.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,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(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) | 출연금 | 1.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<br>(중략)<br>2.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,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(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)<br>※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·출연 및 연례적·반복적 출자·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음 |
|     | (생략)   |     | (생략)  |

출처 : 행정안전부,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2020)

##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### 가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- 의안번호 1977 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출자·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 결절차 개선에 따라,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<sup>1)</sup>의 ‘매년’ 출자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‘2년’ 마다 받는 것으로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제12조(재산 및 운영재원 등) ① ~ ③ (생략)<br><br><신 설> | 제12조(재산 및 운영재원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br><br>④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3에 따라 시장은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아야 한다. |

1)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(출자·출연의 동의) 시장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

- 의안번호 1978 「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출자·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 의결절차 개선에 따라,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의 ‘매년’ 출자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‘2년’ 마다 받는 것으로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11조(출연금 교부)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| <p>제11조(출연금 교부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시장은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아야 한다.</p> |

- 의안번호 1980 「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출자·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 의결절차 개선에 따라,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의 ‘매년’ 출자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‘2년’ 마다 받는 것으로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| 개 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 안  |
|---|--|
| <p>제12조(출연금 교부) (생   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<u>&lt;신    설&gt;</u></p> | <p>제12조(출연금 교부 등) ① (현행<br/>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<br/>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<br/>의3에 따라 시장은 시의회의 사<br/>전동의를 2년마다 받아야 한다.</p> |

### 나.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출연기관 출연동의 현황

#### 1. 법적 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<sup>2)</sup> 및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3, 4<sup>3)</sup>에 의거하여 의회는 사전

2)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3)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(출자·출연 동의안)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·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출자·출연 사무명
2. 출자·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출자·출연 사무 내용
4. 출자·출연 기관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6. 이사회 회의록
7. 결산 보고서
8. 그 밖에 출자·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

에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출연기관별(총 5개소)<sup>4)</sup> 출연 동의안 심사를 실시하고, 출연금 편성을 위한 출연여부를 승인하고 있음.

- 본 법안의 취지는 출자·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적 통제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가 편법적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 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

- 하지만, 최근 5년간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출자·출연기관 동의안 심사 결과, 총 21건, 100%가 원안 가결되었음.

〈표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 · 붙임 참고

| 출자·출연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사여부 |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심사결과  |
|--|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
|  | '16  | '17<br>5) | '18 | '19 | '20 |       |
|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○         | ○   | ○   | ○   | 원안 가결 |
| 서울시 복지분야<br>(서울특별시 복지재단<br>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) | ○    | ○         | ○   | ○   | ○   |       |
|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| -         | ○   | ○   | ○   |       |
|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○         | ○   | ○   | ○   |       |

\* 2019년도 설립

4)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, 서울특별시 복지재단,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,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,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

5) 16, 17년도 서울시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의 출연동의안은 복지분야 출연동의안으로 통합하여 제출됨.

## 다. 보건복지위원회 출연기관 개별조례 사전의결 신설

- 출자·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절차 개선에 따라 ‘사전의결’을 일정기간 내에 실시하여 입법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5조<sup>6)</sup>에 따라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, 2년에 1번씩 위원회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그 주기에 맞춰, 사전의결 기간은 ‘2년’으로 정함.
- 의회는 출연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매년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실시하고 있음. 매년 반복적으로 출연동의안의 심사와 예산 심의를 반복하고 있고 원안동의가 반복되고 있는 바 출연여부만을 결정하는 출연동의안의 경우 반복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입법적·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.

## 라. 보건복지위원회 출연기관 평가 현황

- 또한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7),118),169)

6) 제3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
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7) 제5조(심의위원회의 회의·운영)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5. 10. 8.>

8) 제11조(지도·감독)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1. 출자·출연 기관이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
2. 출자·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

조에 의거하여,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, 경영실적 평가, 지도·감독 등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.

〈표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출연기관 평가 현황

| 출자·출연기관        | 주기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평가내용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|
|                | 운영<br>심의위원회 | 경영실적<br>평가 | 지도·<br>감독 |   |
|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 | 심의사항<br>발생시 | 1년         | 상시        | - (운영심의위원회) 최초 설립, 전년 대비 출연금 10%이상 증액 시 운영의 타당성<br>- (경영실적 평가) 예산, 회계, 사업운영<br>- (지도·감독) 이슈사항 |
|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|
|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|
|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|
| 서울특별시 공공교육진흥재단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|

마.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: 원안 동의

○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연례적, 반복적 출자·출연에

9) 제16조(경영실적 평가·진단) ①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·진단의 기본방향,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·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,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, 경영성과, 업무의 능률성, 공익성 및 시민서비스,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,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·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0. 8.>

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전년도 예산서
2.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
3. 회계감사 보고서(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)
4.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

대해 일정기간 사전의결을 실시함으로써 매년 동의절차 진행에 따른 입법 및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재단 운영의 안정성 도모가 가능하므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.

### 3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지침의 개정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여, 입법정비를 통해 조례해석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쟁점사항은 없음.
- 본 조례 개정으로 연례적, 반복적 출자·출연에 대해 일정기간 사전의결을 설정하여 입법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,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, 서울특별시 복지재단,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동의안 심사 결과 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 실시 및 신규추진 사업의 적합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 하지만 의회는 예산심의 등을 통해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, 서울특별시 복지재단,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## 참 고      관련법령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【지방재정법】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의 결을 얻어야 한다.

#### 【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】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나. 조례

### ○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

#### 【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22조의3(출자·출연의 동의) 시장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## 【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22조의4(출자·출연 동의안) 시장은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·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출자·출연 사무명
2. 출자·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출자·출연 사무 내용
4. 출자·출연 기관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6. 이사회 회의록
7. 결산 보고서
8. 그 밖에 출자·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



○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

**【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】**

제12조(재산 및 운영재원 등) 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
3. 기부금
4. 그 밖에 수익금

○ 서울특별시 복지재단

**【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】**

제11조(출연금 교부) 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

**【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】**

제12조(출연금 교부) 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**붙 임**

**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 세부 결과**

| 연도   | 출자·출연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사결과  | 검토사항  |
|------|---|-------|---|
| 2016 | 서울시 복지분야<br>(서울특별시 복지재단,<br>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) | 원안 가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의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, 각 재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.</li> <li>- 다만, 유사 사업의 중복 실시가 없도록 기관 간의 업무상 조정·연계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음.</li> </ul>   |
| 2017 | 서울시 복지분야<br>(서울특별시 복지재단,<br>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) | 원안 가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의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, 각 재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.</li> <li>- 다만, 유사 사업의 중복 실시가 없도록 서울특별시복지재단 및 여성가족재단 등 기관 간의 업무상 조정·연계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음.</li> </ul>  |
| 2018 |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안 가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민의 사회서비스의 선택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현의 당위성이 인정되어지므로 금번 출현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짐.</li> <li>- 옥상옥 조식이 될 소지의 문제 또한 논란 및 기존의 관리조직과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의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, 서울복지재단과의 역할 중복 등이 존재함.</li> <li>- (반대) 시범사업 국비지원에 대해서도 아직 예산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및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.</li> <li>-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개선의 목적이기에는 시장에서의 공급이 5% 내지 7%로에 국한되므로 근본적인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함.</li> <li>- 서울시 산하공공기관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므로 재단설립은 신중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.</li> </ul> |
|      |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안 가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의안은 법적·정책적 요건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</li> <li>- 앞으로 선임될 재단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재단 사업계획 및 집행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당위가 있다고 보임.</li> </ul>  |

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     |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| 원안 가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의안은 법적·정책적 요건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</li> <li>- 앞으로 선임될 재단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재단 사업계획 및 집행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당위가 있다고 보임.</li> </ul>  |
| 2019 |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 | 원안 가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음.</li> <li>- 소속기관의 확대에 따른 출연금의 확대편성 및 인력 관리(550명(19년) → 4,126명(22년)) 등 재단 규모의 대형화로 인한 돌봄서비스제공의 안정적 제공 기관 확대 및 재정 지출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재단 본부의 세밀한 관리가 요망됨.</li> </ul> |
|      |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    | 원안 가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음.</li> <li>- 예산안 심의 시 신규 추진 사업 및 조직 개편 시 타 기관과의 사업 중복성 여부 등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.</li> </ul>  |
|      |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| 원안 가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음.</li> </ul>  |
| 2020 |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 | 원안 가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현재까지는 단순히 실적위주로만 파악되고 있어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 등 질적인 부분의 만족도까지 파악하는 것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.</li> </ul>   |
|      |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    | 원안 가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음.</li> <li>- 복지재단의 신규 사업추진 적합성 및 기추진 사업 중 타 사업과의 중복성 및 복지재단의 본래 목적과의 적합성 등의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 필요함.</li> </ul>   |
|      |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| 원안 가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례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할 수 있겠음.</li> </ul>   |